

## ITU의 고위위원회 (HLC) 현황과 국내대응( I )

\* 김 은 주 박사

### 목 차

1. 서론: HLC의 배경
2. HLC의 현황
3. 아국의 대응
4. 결 론



## 1. 서론; HLC의 배경

급변하는 전기통신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ITU의 상설기관 및 각종 회의를 원활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특히 전기통신개발센터(Center for Telecommunications Development)를 중심으로 이행해오던 개도국 원조 기능을 담당할 기관을 상설기구화하여 ITU의 정규예산에서 개발사업을 위한 자금을 확보토록 개도국의 요구가 증대 되었다.

이에 따라, ITU의 조직 및 재정, 인사, 관리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뿐 아니라 ITU의 다수 의석을 차지하게된 개도국의 요구를 제도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방안으로, 1989년 니스에서 개최된 제13차 전권위원회 결의 COM 7/1과 1989년 11월 개최된 제45차 관리이사회 특별회의 결의 No. 990에 의해 고위 위원회(High Level Committee)가 구성되었다. HLC의 최종보고서가 1991년 제46차 관리이사회에서 채택된다면 1992년 임시전권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사실, 전권위원회, 관리이사회, 자문위원회 등 ITU의 각종 회의 및 조직, 그리고 표준화, 규제, 기술원조 등의 기능은 전기통신관련 기관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동기구의 변화는 단순히 동기구 자체는 물론 아국을 포함한 약 166 회원국 및 관련기구에게 직, 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 추측된다. 따라서, 본 소고는 HLC의 현황 및 아국의 대응을 중심으로 고찰하여, 관리이사회에서의 적극적인 활동 및 국내산하기관의 효율적인 대안을 위한 기초 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 2. HLC의 현황

### 2. 1. HLC의 구성

HLC는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21명(국)의 지명된 대표로 구성 되어있다.

<표-1> HLC의 지명대표 및 국적

지 역	국 가 명	지명대표 ( T* No. & 전체의장)
북미 (2)	미국 캐나다	Gerald B. Helman (T 7) Gabriel I. Warren (전체의장)
남미 (2)	브라질 콜롬비아	A. C. A. Ituassu S. Regueros Swonkin (T 3)
서유럽 (4)	독일 덴마크 영국 프랑스	Heinrich Venhaus Poul Haneen (T 6) Mike Moris Michel Toutan (T 2B)
동유럽 (2)	소련 유고	Petter S. Kurakow Ilija Stojanovio (T 2A)
아시아/ 태평양 (5)	호주 일본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George E. Hams (T 1) Nobukazu Morishima Zhongen Liu M. Kesava Rao Johathan L. Parapak (T 6)
중동 (1)	사우디아라비아	Sami S. Al-Bashoor
아프리카 (5)	말리 모로코 세네갈 말제리아 짐바브웨	Mamadou BA Abderrazak Berrada (T 4) Loon C. Ciss Abdelkrim Boussaid Mazwi F. Dandato (T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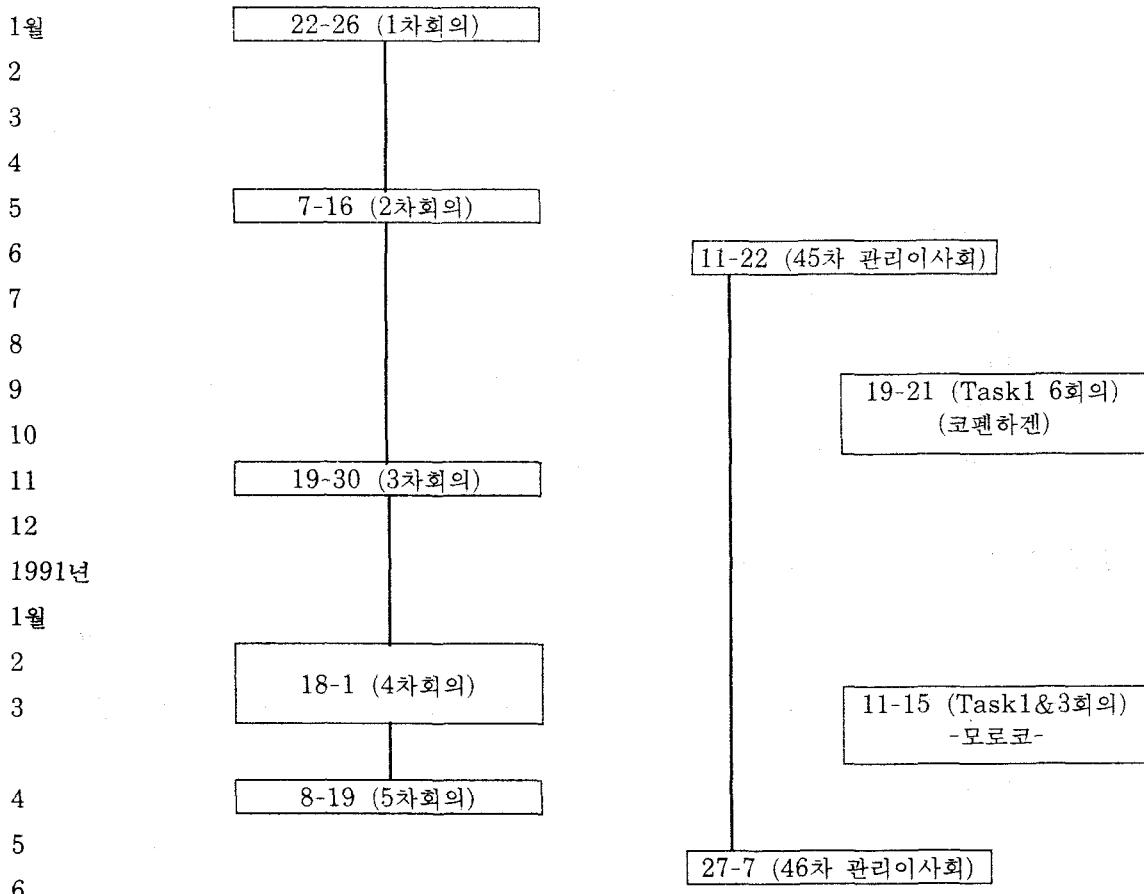
\* T = Task 별 rapporteure

## 2. 2. HLC의 진행 일정

제45차 관리이사회 특별회의의 결의 No. 990에 의하면, 제46차 관리이사회까지 총4차 회의를 갖을 예정이었으나, 제2차 회의에서 일정을 조정하여 <표-2>에서와 같이 5차의 회의를 갖도록 결정을 하였다. 한편, 일부 회원국은 (예, 모로코, 덴마크) 특히 관심이 있는 과제(Tasks)에 대해 임시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표-2> HLC 및 관련회의 일정

1990년



## 2. 3. HLC 및 관련회의의 주요 의제 및 결과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5차에 걸친 HLC 및 관련 회의의 주요 의제 및 결정은 다음과 같다.

### 2. 3. 1. 제1차 HLC 회의 (1990. 1. 22-26)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차 회의에서 카나다의 G. Warren을 의장으로 선출하고, HLC의 과제(Tasks)를 <표-3>과 같이 8개 분야로 분리시켰으며, 각과제별로 의장을 <표-1>에서 와 같이 선출하였다. 과제 (Task) 7은 제2차 회의에서 추가되었다.

<표-3> HLC의 과제 (Task)

Task 1	표준화의 기능 및 CCIs의 구조와 기능
Task 2A	CCIR 및 IFRB의 구조와 기능: 무선규칙(RR)의 단순화
2B	서비스규칙 (국제전기통신규칙:ITR)
Task 3	전기통신개발국(BDT) & 전기통신개발센터(CTD) 구조와 기능
Task 4	ITU의 각종회의 (전권위원회, 관리이사회, 주관청회의 등)
Task 5	사무총국의 구조와 기능
Task 6	전기통신 환경
Task 7	ITU의 재무, 인사, 정보관리체계

(Task7\*은 선택된 외부 자문회사와 공통으로 검토 )

### 2. 3. 2. 제2차 HLC 회의 (1990. 5. 7-16)

제네바에서 개최된 2차 회의는 제45차 관리이사회에 제출될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HLC가 고려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ITU의 회원국 및 상설기관으로 하여금 의견을 1990년 10월 1일까지 제출하도록 촉구하였다. 한편, ITU와 관계있는 다른 국제기구들의 견해 수렴을 위해 해당기구들의 의견도 제출하도록 허용하였다.

전기통신개발국(BDT) 문제와 관련하여, HLC는 특별한 권고안을 제출하기보다는 ITU의 상설기으로서 Task 3의 일부로 고려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전권위원회의(니스, 1989) 결의 PL-B/3에 의해 설치될『자발적 전문가 집단 (Voluntary Group of Experts: VGE)

』의 과제가 HLC의 과제(Task 2)와 관련됨을 감안하여, VGE의 과제에 무규칙의 간소화 문제를 포함하도록 관리이사회에 제출하였다.

한편, 외부 자문회사(Consultant)를 선정하여 현장과 협약이 부여한 기능을 ITU가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의 여부 및 전반적인 운영체계를 검토하기 위해 1차 회의가 선정한 6개의 과제에 Task 7를 추가 하였다. (<표-3> 참고)

HLC의 Task 7과 회사의 업무를 조정하기 위해 G. Helman을 임명하였다.

### 2. 3. 3. 제45차 관리이사회 (1990. 6. 11-22)

전권위원회 (니스, 1989) 결의 COM7/1과 관리이사회 결의 No. 990에 의거하여, HLC의 진행 및 결과를 관리이사회에 보고, 승인을 얻을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HLC는 제45차 관리이사회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3개 항목의 승인을 요청하였다; ㄱ), HLC의 진행과 중간 결과에 주목 및 논평; ㄴ), 외부 자문회사가 수행 할 과제(Task 7)의 승인 및 사무총장이 자문회사(Booz, Allen & Hamilton Co.)를 계약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 ㄷ), HLC로 하여금 추가(예, 5차) 회의를 소집하도록 권한 부여.

한편, 각 과제(Task) 별로 HLC가 작성하여 관리이사회에서 승인된 설문지(Annex 7; 현안의 요약)를 회원국들(주관청)에게 배포하여 그 의견을 수렴하고자 시도했다.

### 2. 3. 4. 제3차 HLC회의 (1990. 11. 19-30)

3차 회의에서는 ITU현장에 명시된 목표가 변화하는 통신환경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커다란 이견이 야기되지 않았으나, 전략적 계획을 통한 효율적인 운영, 재무, 인사 및 정보관리체계의 개선, 무선규칙의 간소화 및 일부 구조개편의 단행이 필요할 뿐 아니라 민간 기업이나 이용자단체들이 ITU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논의 되었다.

특히, 과제(Tasks)와 관련하여 3차 회의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된 분야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 Task 1. 표준화 분야

현재 CCITT와 CCIR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표준화 활동을 하나로 통합하여 단일한 표준화 기관(예, Standardization Organ)이 담당하며, 현 CCIR의 다른 기능은 지구 및 우주무선통신기관(예, Radio Communication Organ)이 일임하게 한다. 이와 관련하여 비공식으로 모로코 (<표-1>) 회의에서 논의될 주요 의제는; ㄱ). 표준화, 스펙트럼 관리 및 무선통신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검토; ㄴ). 표준화 기관의 역할과 권한을 규정하고, 회의를 통한 기능 수행을 검토하며, 회의의 기능을 결정; ㄷ). 표준화 과정에 민간부문의 역할 확대 및 자금조성의 확대 방안 등이다. 아울러, 개도국의 표준화 과정에 참여 확대 문제는 Task 3과 관련하여 논의하기로 했다.

### Task 2. 규칙 분야

#### 2A. 1. 지구 및 우주 무선통신

ITU가 무선 주파수 스펙트럼 및 정지위성궤도의 효율적인 관리기능을 지속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다음과 같이 논의를 했다. 즉, 이 분야의 기능을 수행할 새로운 기관(예, Radio Commuication Organ; RCO)을 설치하여 IFRB의 활동과 일부 CCIR의 활동을 통합하며, RCO는 간소화된 무선규칙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한편, 전권위원회는 RCO의 구성 및 상설 여부를 검토, 결정해야 할 것이다.

#### 2A. 2. 무선 규칙 (RR)의 간소화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오던 무선 규칙(RR)의 간소화에 대한 니스 전권 위원회의 지시에 의거하여, 관리이사회 결의 N0.1009은 VGE를 설치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1991년 1월에 VGE가 고려할 RR 간소화 문제에 대해 HLC는 다음과 같은 일반 원칙을 제시하였다;

- ㄱ). 주파수와 정치위성궤도에 공정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ㄴ). 비록 RR이 범세계적 및 지역간의 조정을 위해 필요한 규약이지만, 지역내 및 쌍무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최대한 이 RR을 준해야 한다.
- ㄷ). 법적 구속력을 지닌 RR은 최대한 간소화시키고, 구체적인 사항은 CCIR의 권고안, 처리규칙, 기술표준 등 보다 용이하게 개편할 수 있도록 비규제적 문항에 포함한다.
- ㄹ). 간소화된 RR의 실행을 위한 데이터베이스(D/B)의 개편 절차는 현실적이고 융통성이 있으며 효율적이어야 한다.
- ㅁ). 주관청간의 충돌을 피하면서, IFRB의 해석 기능을 극소화한다.
- ㅂ). 기술의 발달을 고려하여, 지정된 무선통신 서비스 (radio services)의 수를 실현 가능한한 극소화한다.
- ㅅ). 운영 문제는 다른 정부간 기구에 의해 가장 잘 다루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 ㅇ). 실현가능한 절차 (procedure)는 표준화시켜야 하며, RR의 절차는 최소한의 사항만을 포함해야 한다.
- ㅈ). 자료의 교환 및 유지를 위해 현대식 전자기술을 최대한 이용해야 한다.

## 2B. 국제전기통신 규칙 (ITR)

미래를 위해 최소한의 틀(framework)을 형성하기 위해, 국제전기통신 규칙(ITR)은 다양한 국내 여건 및 변화하는 전기통신 환경에 충분히 융통성있게 적응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또한, ITR의 구체적인 이행에 가장 실현성있는 방법은 HLC에 의해 구상되고 있는 표준화 기관 (Standardization Organ)에 의해서라는 결론도 내렸다. 한편, HLC는 사무총장으로 하여금 GATT가 채택하는 주제에 대해 ITU와 GATT 사이에 어떤 관계가 존재하는가를 분석하여 차기 회의에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 Task 3. 전기통신 개발 분야

개발 문제에 관해서는 CTD와 BDT가 통합하도록 논의가 되었다. 구체적인 구조는 더 논의를 해야하지만, 크게 민간부문의 참여를 장려하는『개발 위원회』와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개발 회의』로 구성될 것이다. 특히『개발 회의』에서 제기 된 내용들은 구속력을 갖기 보다는 권고 및 통보의 성격을 지녔다는 점에서 다른 ITU회의와 차이가 있다. 또한, 개도국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보조비를 제공할 것도 논의되었다.

한편, 1991년 2월 13-15일에 모로코에서 추가로 개최된 비공식 회의에서는 BDT의 기능과 구조 및 개발 회의에 대해서 논의 되었다. 동 회의는 1990년 Harare에서 개최되었던 아프리카 개발회의의 경험, 사무총장에 의해 실시되고 있는 CTD의 평가결과, 민간기업체들의 참여 및 기부금 조성 방안에 대한 CTD 특별 조사반의 권고 등도 고려를 했다.

#### 2. 3. 5. 제4차 HLC (1991. 2. 18.-3. 1) 및 제5차 HLC(1991. 4. 8-19) 회의

상기 과제들을 중심으로 결정된 제4차 회의(2.18-3.1)의 결과는 회원국에게 배포가 되지 않은채 현재 개최되고 있는 제5차 회의 (4.8-19)에서 최종 문서화 되고 있다. 이 최종 결과가 제46차 관리이사회(1991. 5. 27-6. 7)에 제출되어 채택이 된다면, 1992년 임시 전권위원회를 개최하게 될 것이다.

### 3. 아국의 대응

비록 아국이 HLC의 대표로 지명되지는 않았으나, ITU의 구조 및 기능을 전폭적으로 개편하게 될 HLC의 연구와 그 결과에 대응하기 위하여, 아국은 ITU와 관계가 깊은 산하 기관·예, 체신부 관계부서 (통신정책국의 국제 협력과와 진흥과, 전파관리국의 기술과와 주파수과), 한국통신기술협회, 한국전자통신연구소, 한국통신 사내연구단, 통신개발연구원 등·관계자들과 2차례의 회의(1991. 2. 1 & 2. 6)를 갖고 HLC가 작성한 설문지중에서 표준화 기능(Task 1), 무선 규칙(Task 2A), ITU의 구조(Task 5) 문제를 중심으로 아국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수렴, 제출하였다.

#### 3. 1. 표준화 기능

첫째, 세계적 표준화작업은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전기통신 기술, 정책, 경쟁적 시장경쟁등을 고려할 때, 기존의 주관청(Administrations)과 공인된 민간운영회사 (RPOA)뿐아니라 새로운 민간 서비스 및 제조업체, 그리고 이용자들의 이해와 욕구들도 보다 효율적으로 총족시켜주어야 하며, 이러한 『다양한 산하기관들이 표준화과정에 쉽게 접근 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ITU가 국제 이용자 집단들로 하여금 표준화 과정에 참여하게하는 방법』으로서,

- ㄱ). ITU와 회원국들이 함께 홍보 및 계몽이 필요하며;
- ㄴ). 비록 활동상 문제가있기는 하지만, 기존의 국제전기통신사용자단체 (INTUG)에 가입 및 이용;
- ㄷ). 참가대표단에 이용자들(예, 기업체)도 포함시킬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제의했다.

셋째, 『개도국이 CCIs의 표준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 ㄱ). 개도국으로 하여금 표준화의 중요성을 우선 인식시켜야하며, 이를 인식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
- ㄴ). 개도국 출신 Rapporteur의 선발을 장려하고, 이를 위해 특정한 훈련및 지원이 필요하다. 한편, 『CCIs가 개도국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기술원조 방법』으로는 새로운 기관

을 신설하기 보다는 CCIs 혹은 이를 대체할 표준화(Standardization Organ)과 전기통신개발국(BTD)이 공동으로 인력양성 및 기술이전 등의 기능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 또한,『CCIs가 개도국에게 정보를 보급하는 방법』으로는, 서적, 마이크로피시, 데이타베이스 등을 고루 마련하여 자국의 능력 및 형편에 따라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넷째,『CCIs의 향후 적절한 조직형태』로서는 기존의 CCITT와 CCIR를 하나의 상설기관(예, Standardization Organ)으로 통합하는것이 바람직하며, '신속승인절차'가 합의된 이상 CCIs의 총회 (Plenary Assembly)를 존속시킬 것 인지, 연구반 회의 (SG Meetings) 혹은 주관청회의 (Administrative Conferences) 등으로 대체할 것인가도 검토 하도록 제의했다.

다섯째, CCIs의 총회(1988, 1990)에서 각각 합의된 『신속승인절차』에 대해, ITU에서 각 주관청으로 배달되는 문서의 시간 및 주관청이 관련 산하기관들로부터 견해를 취합, 결정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오래걸리기 때문에 현재 3개월의 공람기간을 연장하도록 제의했다.

여섯째,『CCIs와 ISO 및 IEC의 협력관계』에 대해, 기존의 JTC1을 활성화하되 재편성될 산하기관의 성격에 따라 보다 긴밀하고 효율성있는 협력 관계를 강화해나갈 것을 제의했다.

일곱째,『ITU와 지역표준화기구(RSO)간의 협력 방안』으로서, 양기구가 단순한 참관인(observer) 이상의 적절한 자격으로 서로의 활동에 초대되어야 한다. 사실, 일명RSO라는 기존의 지역기구중 유럽의 ETSI를 제외하고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회원을 가진 기구가 없다. 따라서, ITU가 RSO의 개념을 정의할 필요가 있으며, 일단 RSO의 자격을 갖춘 기구는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표준을 채택하며 그 표준화 과정은 공개되어야 한다. 또한, 표준 항목의 중복을 피해 각 RSO가 연구할 주제가 상호 조정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RSO에 의해 채택된 지역 표준의 초안들은 ITU에 제출되어 국제표준으로 결정 되

는 절차를 걸쳐야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권고안 및 관련문서의 형태』는 신속승인절차의 합의 및 막대한 문서분량 등을 고려하여 현재의 장정본(book-binding)에서 ring-binding 형식으로 바꾸어 추가 및 신규안만을 발간 배포하면 비용 측면에서, 효과적일 것이다. 한편, TIES라는 software를 이용하는 것도 미래지향적인 방안일 것이므로, 이의 유익함과 효용성 등을 강조, 홍보 할 필요가 있으며, 각종 ITU의 규정 - 예, 협약, 규칙, 권고 (표준) - 및 각 회의의 의제, 공고사항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TIES 자체의 내용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 3. 2. 무선통신 관련 기관 및 규칙

첫째, 『국제주파수등록위원회(IFRB)의 조직 형태』와 관련하여,

- ㄱ). 단일인 보다는 '지역 안배'를 기초로한 기존의 연합적(Collegiate) 형태의 운영을 지향하며;
- ㄴ). 무선 주파수 및 정지위성궤도를 범세계적으로 공정히 분배하기 위해서는 주관청의 대표 보다는 충분한 경험과 자격을 갖추고 선출된 개인들이 IFRB(혹은, 구조 개편시 신설기관)의 관계업무를 담당해야 하고;
- ㄷ). IFRB(혹은, 신설기관)는 상설 보다는 임시적인 기관의 성격을 지녀야 하며;
- ㄹ). IFRB의 해석은 회원국의 이해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해석이 시행 규칙으로 공표되기 전에 주관청이 검토, 논평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 ㅁ). 특히, 각 회원국의 주파수 스펙트럼 분배, 관리를 효율화시키기 위해 IFRB(혹은, 신설기관)는 BTD과 연계하여 감시 기준 및 기술 등에 대해 각 주관청의 담당 직원들에게 단기간 훈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둘째, 『무선 규칙』에 대해서는, '시행절차'를 개정 혹은 간소화시켜야 한다.

셋째, 『CCIR와 IFRB의 업무영역이 중복됨에 따라 단일한 상설기관으로 통합』하는 문제에 대하여, 단순히 양기관만의 중복뿐 아니라 ITU전체 산하기관들 사이에 상호 중복되

는 부분을 최대한 줄이고 상호 보완 혹은 협조 체제를 조성해야 한다.

### 3. 3. ITU의 구조 및 기능 개편

ITU의 구조적 성격에 대하여 물론 많은 이견이 있으나, 현재 사무총장과 선거직 간부들(혹은, 사무총국과 CCIS, IFRB 등의 상설기관) 사이에 견제된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소위 『연방제적 구조』로 많이 인식되고 있다. 이 구조적 특성은 각 산하(i.e., 상설)기관이 자체적으로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조직상 장점은 있겠으나, 급변하는 통신환경의 요구를 신속하고 비용-효과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에 많은 회의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변화하는 국제 전기통신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ITU 자체가 구상하고 있는 『전략적 정책기획과 (Strategic Planning and Policy Unit; SPPU)의 신설』에 동의하되 사무총국에 귀속시킴으로 인해 ITU 자체로 정책을 연구, 분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도록 제의했다. 그러나, 그 기능을 전담할 실무자와 별도로 長을 임명내지 선출할 필요성은 배제했다. 한편, SPPU의 기능중에 일부로서 전기통신정책의 수립, 각 상설기관 및 각종 회의간의 조정(liaison) 역할 등도 수행하도록 제안했다.

또한, SPPU 혹은 ITU내 산하 기관이 기구의 성격별로-예, 표준화기구(ISO, ETSI, T1 Committee, TTC등), 위성기구 (INTELSAT, INMARSAT), 서비스 및 무역 관계 기구(GATT)- 다른 국제 및 지역기구와의 관계 및 관련된 현안을 시의적으로 분석하고 상호 협력 및 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제시했다.

일부는 표준화 기능에 관련된 제안과 중복되기도 하지만, 기존의 『상설기관(예, CCIs, IFRB, BTD)에 대한 구조 개편안』으로서는,

- ㄱ). 국제 표준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중복을 피하기 위해, CCIs을 통합시켜 단일한 표준화 기구 (예, Standardization Organ)를 신설하고;
- ㄴ). 기존 IFRB의 표준화 기능은 지속하되 CCIR과 중복되는 업무를 통합하며;
- ㄷ). 신속승인절차의 합의와 CCIs의 통합과 맥을 함께하여 CCIs의 총회 및 주관청회의

의 지속적인 개최여부에 대한 검토를 요구했고;

ㄹ). 중복되는 기존의 전기통신개발센터(CTD)와 사무총국내의 기술협력과(TCD의 개발 및 원조 기능을 전기통신개발국(BTD)으로 통합시켜 보다 능률적이고 비용-효과적으로 대처하는 안들을 제의했다.

ITU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전기통신 기술의 활용 방안』으로서,

ㄱ). 회의 참가자가 직접 컴퓨터 단말기를 이용하여 의사 결정 과정을 자막을 통해 기록, 수정될 수 있다면 회의 진행중에 반복되는 수정안을 문서로 배포할 필요도 없고 수정된안을 다시 재검토해야하는 노력, 시간 및 비용을 절감 할 수 있을 것이고  
ㄴ). 화상회의를 통해 회의를 개최하게 되면 시간 및 여행경비 등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 4. 결 론

위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현재 HLC회의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분석한다는 것은 시기 상조이다. 더욱기, 아국이 HLC 대표로 지명되지 않아 구체적인 구조 및 기능의 개편 현황에 대한 정보는 아직 입수할 수가 없다. 그러나, CCITT 위원장과 HLC의 지명대표중에 한분과의 인터뷰에 의하면, 아국이 제안했던 대로 CCIs가 통합되어 새로운 표준화 기관(Standardization Organ)을 신설하며, CCIR의 일부와 IFRB를 통합하여 무선통신 기관(Radio Communication Organ)을 신설하고, CTD를 BTD로 통합시키기로 제4차회의에서 결정되었다고 한다.

한편, HLC의 연구가 표준화(Task 1), 규칙(Task 2), 개발(Task 3) 등의 문제 중심으로 논의된 것에 비해, 아국은 규칙(Task 2)과 ITU의 구조(Task 5), 특히 표준화 (Task 1)에 관련된 문제를 중심으로 관심을 표명하고 의견을 제시했다. 물론, 아국의 案이 어느 정도 HLC의 회의에 반영되었는 가에 대해서 아직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5차회의 결과에 따라 아국의 안도 다소 개정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전술한 바와 같이 제5차 회의의 결과가 제46차 관리이사국에서 채택된다면, ITU의 구조 개편을 주요 의제로하여 1992년에 임시전권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즉, ITU로서는 역사적 변화 혹은 전환기를 맞는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가 있다. 또한, ITU의 이러한 변화는 동기구와 직접, 간접적으로 연계를 갖고 있는 아국의 전기통신 산하기관-특히, 체신부, 한국통신기술협의, 한국통신 등 - 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그 대응 부서 및 방안도 변화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HLC의 진행과정및 결과를 시의적으로 대응할 필요 가 있다고 하겠다.

(\*제2부로서 HLC의 제4, 5차 회의 결과와 제46차 관리이사회의의 결과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아국의 입장 및 대응을 고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1. Circular-letter No. 9, 8 February 1990. HLC. ITU.
2. Circular-letter No. 33, 27 June 1990. HLC. ITU.
3. Doc. 2 (Rev. 1), 26 January 1990. HLC. ITU.
4. Doc. 23 (Rev. 1), 30 January 1990. HLC. ITU.
5. Doc. 52 (Rev. 1), 18 June 1990. HLC. ITU.
6. Doc. 95, 6 Deoember 1990. HLC. ITU.
7. SG/Centre MD-1195, 28 February 1991. Secretariat General. ITU